1-19	효율적인 화학물질정보 관리 시스템 및 제도 마련	기후부장관

□ 권고 내용

○ 기후부장관은 효율적인 화학물질정보관리를 위해 상위사용자와 하위사용자 간의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 및 제도를 마련하기 바랍니다.

□ 이행 현황

○ **(제도)**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**유·위해성 정보**를 **직접 확인**하고, **공유·보완**할 수 있는 **화학물질 정보관리 체계 마련**

- 화학물질 정보 공개대상을 구체화*하고 누구든지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·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**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**('24.2.6) **및 하위법령 개정·시행**('25.8.7)

  * △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, △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, △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 등

- 하위사용자가 화학물질 등록·신고현황, 유해성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국민 정보 공개* 중

  * 現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→ 後, 화학물질정보 공동활용 플랫폼

○ **(시스템)** 화학물질 사용자가 물질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에 분산된 화학물질 정보를 통합·관리하기 위한 **화학물질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추진**

- 화학물질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(ISP) 수립('25.12) 및 플랫폼 개발사업 착수('25.8~)

□ 향후 계획

○ 등록·신고된 물질 현황 및 유해성 정보 공개 확대(지속)

○ 화학물질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(~'27)